

2022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2. 3.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특수교육정책과

목차

I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1. 특수교육기관 확충	3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6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9
II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1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3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6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18
	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22
	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24
	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28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32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34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7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40
III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43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45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8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54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56
IV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58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59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61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66
	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68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제 강화	72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74
V	2022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76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78
	2. 기타 행정사항	79

비전·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 목표

-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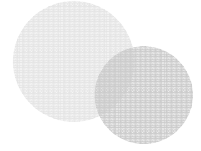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3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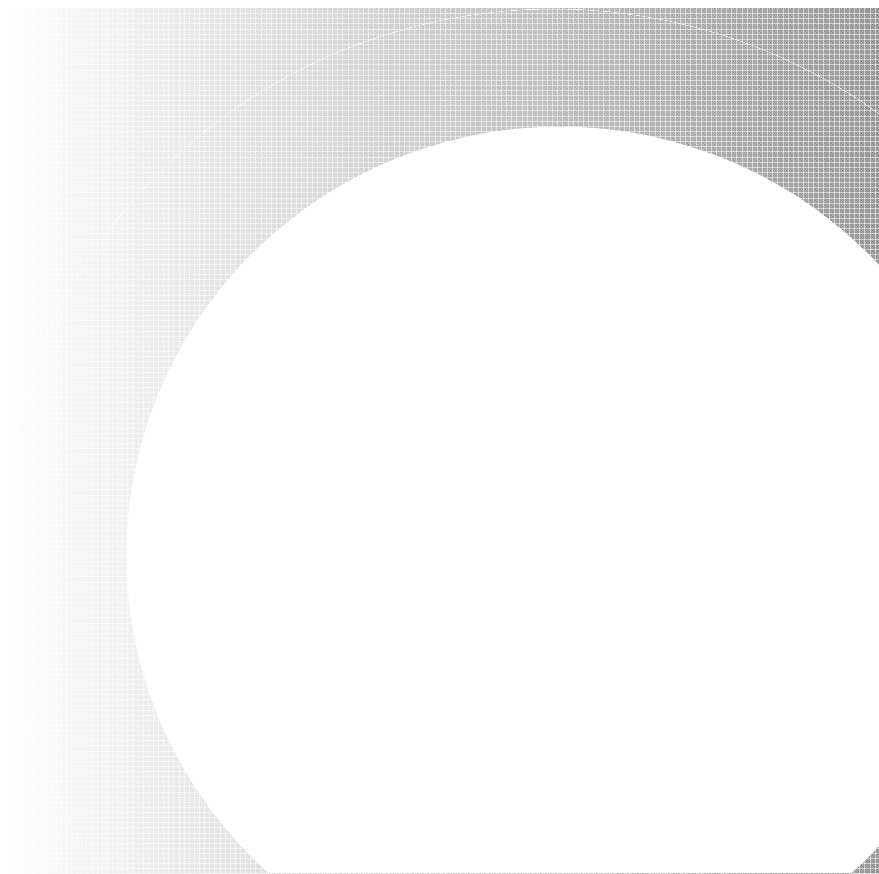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추진 체계

가정-학교-사회 간, 관계부처(기관)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I.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I.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특수교육기관 확충

추진목적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22년 특수학교(5교)와 특수학급(250학급) 신·증설하여 과밀학급 밀집도를 완화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해소
- 시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 특수학교(5교 신설): ('21) 187교 → ('22) 192교,
특수학급(250학급 증설): ('21) 12,042학급 → ('22) 12,292학급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특성화 또는 특수목적 특수학교 설립, 지정·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 조성 기준 검토

3)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2학급 이하의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를 비롯하여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설립 추진

* 주요 형태: (유), (초), (중), (고),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고+전공과) 등

** 특성화 특수학교와 같은 직업교육 중점모델 등

- 대학 부속 또는 병원 내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부산대: 예술, 공주대: 직업, 한국교원대: 체육) 설립 추진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연면적	위치	개교(예정)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 고 12)	138명 (중 54, 고 84)	14,588m ²	부산대 부산캠퍼스	'24. 3.
공주대 부설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	18학급 (고 18)	126명	11,789m ²	공주대 옥룡캠퍼스	'24. 3.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21학급 (중 9, 고 12)	138명 (중 54, 고 84)	14,942m ²	한국교원대	'25. 3.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특수학교(급) 설립 등 추진
 - ※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특수학급(6학급)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경남권, 전남권)에 특수학교(급) 설립 추진 예정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
 - ※ ('21) 통합 단설유치원 5교(인천·경기·충남(2)·전북), 통합 병설유치원 1교(대구), 유치원 특수학급 1,228개 → ('22.3.) 통합 단설유치원 4교(서울·대구·대전·전남) 추가 개원 예정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운영
 - ※ ('21) 인천 25학급, 경기 21학급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 운영(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51교), 추후 예술·체육 분야에도 중점 특수학급 확대 추진 예정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 정원, 학급당 평균 인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자체 계획 수립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
 - 관내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및 추진
- ②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및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고가의 부지매입비 소요 등에 대비하여 택지 개발예정지에 학교 용지 확보, 폐교 부지 적극 활용 등 다양한 방안 고려
- ③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④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공립 유치원(단설·병설)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진목적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호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전보 유예 권장

* (시각) 보행지도사, (청각)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등

-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부장으로 배치 권장
- 교과 중점 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에 해당 전공 특수교사 우선 배치
- 도서지역 또는 읍·면 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교사(1·2급) 우선 배치

< 2021년 특수교사 현황 >

단위: 명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총원
9,112	12,718	1,983	23,813

- 일정 규모 이상 유·초·중·고 통합 특수학교에는 복수 교감* 배치 권장

* ('21) 전국 특수학교 187개교 중 26교(국립 5교, 공립 21교)에 복수 교감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등) 취득 방안 마련 권장

※ (예비특수교사) 특수교사임용 시험에 특수교육 관련 가산점 부여 (현직특수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시·청각장애학생 배치 특수학교 우선 전보 등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검토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통합체육 ▲발명교육 ▲산림체험교육 등
 - ** ▲긍정적 행동 지원 ▲중도중복장애학생 전환 역량 ▲보조공학 역량 강화 ▲교육용 수어 능력 평가·인증 ▲건강장애학생 지도 등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정 평가 역량 강화 ▲특수교사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특수교사 발명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권장
- 장애학생 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도 연수 희망 조사 후 대상으로 포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실시
 -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선도교사 양성 연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토 조성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교원) 장애인권교육 핵심 교원 연수」,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사안 대처 역량 강화 연수(5시간 이상)」 실시
 - 일반교육 교원 대상 자격연수나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장애이해 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과목 1개 이상 개설 권장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자율적 특수교육 수업연구회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및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 확산 등에 기여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2018)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정보공표 > 교원 >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4) 특수교육교원 마음 건강 회복 연수

- 코로나19 대응과 특수교육 업무로 지친 특수교육 교원을 위한 심리·정서 회복 연수 지원(세부 일정과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후 안내 예정)

-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마음 건강 회복 연수 운영

* 숲체원(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

※ 교육부-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업무 협약 체결('21.11.19.)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권교육 핵심 교원 연수 과정에 특수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 가능한 교사 1명을 연수대상자로 추천
- ②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학교 관리자 장애학생 인권 보호 역량 강화 연수 과정에 특수학교 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대상자 추천
- ③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 교사 자격 연수 과정」에 기간제 교사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기간제 교사가 표시과목을 재활복지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특수학교 교사 재활복지 자격 전환 연수에 참여 안내
- ④ 국립특수교육원의 청각장애학생 담당 교원 교육용 수어 지도 역량 강화(기본, 심화) 연수 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협조
- ⑤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추진
- ⑥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2022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임용 및 관리 철저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추진목적

- ▶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 학교 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평가조정* 적용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16 참고)

* 평가의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의 제시 형태, 반응 형태, 검사 시간, 검사 환경 등을 조정하는 것과 같이 평가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력

- ☞ 평가조정 현장 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 지원 강화, 일반학교교원 대상 평가조정 연수 확대, 우수사례 공유

-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정규평가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강구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자료」 교육부, 2021 참고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확충하고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담당교사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통학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 지원인력의 안전교육 의무 이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활동,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이동 등 편의 제공

2)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적정 설치율* 제고

- 국립특수교육원(원격,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집합/원격, 편의증진 공무원 전문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 적극 참여 권장

* 적정 설치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 설치율 :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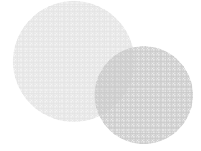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실태점검

-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예산 확보
- 적정·단순 설치율 50%이하인 유·초·중·고·특수학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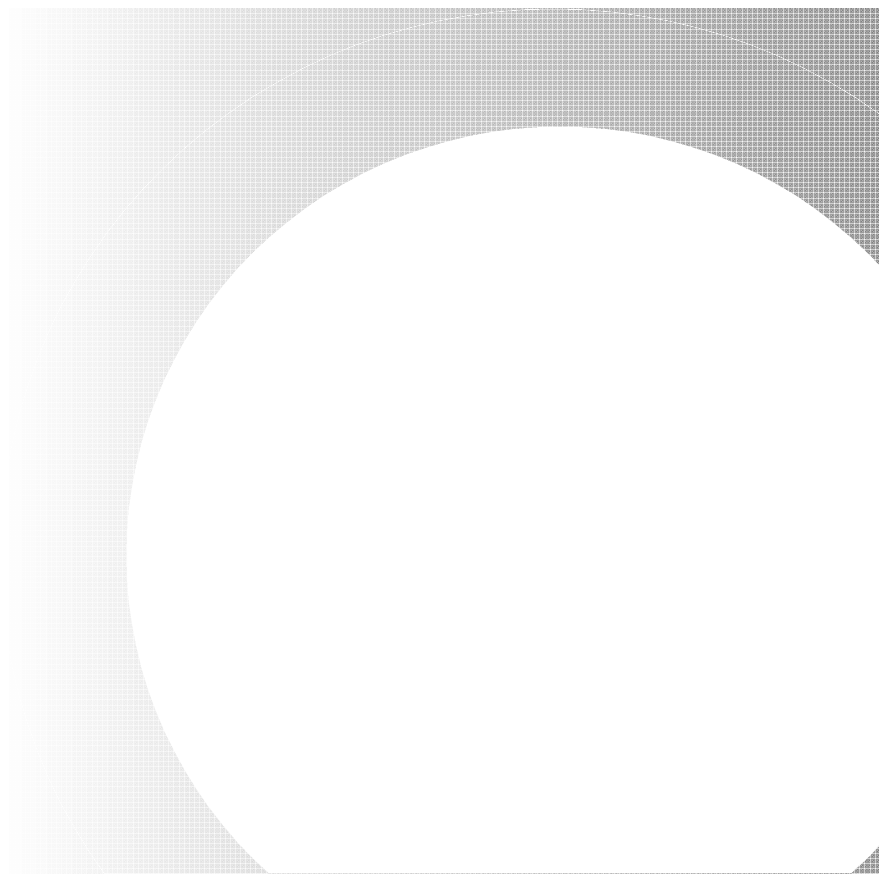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9(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철저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와 평가조정 지원을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 ③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고려한 지원 예산 확보
- ④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예산 확보, 개·보수 추진
- 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공시 안내('22.5.)
- ⑥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 조사 결과 제출('22.11.)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II.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초·중등 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72.2%(21.4.1.기준)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권장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예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 ◆ (위원 구성)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 대학교수, 특수교육 수석교사·고경력 교사(20년 이상),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 전문가, 학부모 등
-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 자료 개발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기능,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운영 가능

< (참고) 2021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현황 >

구분	특수교육 교원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수	기타*	합계
2021	1,161명	98명	72명	61명	512명	1,904명

* 소아정신과의사, 장학관(사), 통합학급 교사, 언어치료사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멘토)과 초·중·고교 특수교육대상학생(멘티) 1:1로 연결하고, 멘티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수업, 학교 행사, 체험학습, 기타 생활 적응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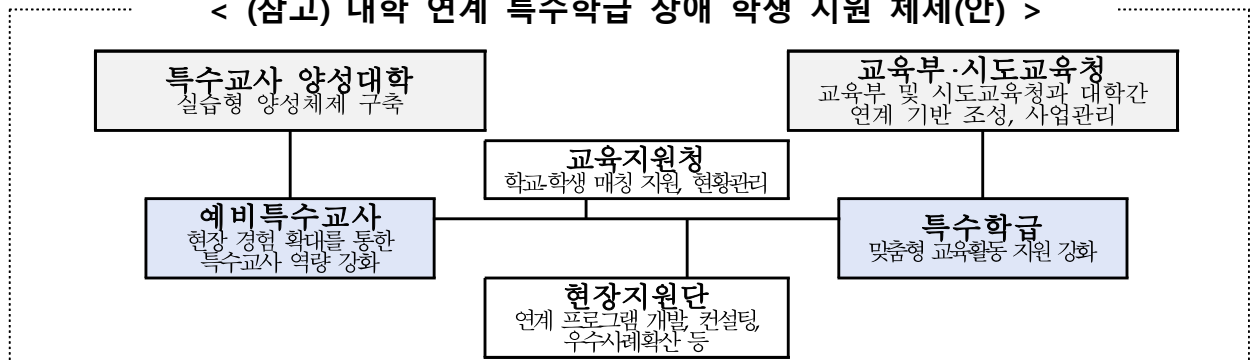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순회교사를 확대·배치하여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 학습장애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개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노력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포함된 일반학급의 학생 정원을 감축 조정하여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1~3명 감축 권장)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등 교육활동 지원 추진

< (참고) 대학 연계 특수학급 장애 학생 지원 체제(안) >



※ 「대학 연계 장애학생 교육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 2021) 참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일반학급의 정원 내 편성(국가인권위원회, 2017)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확대·내실화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현황: ('20) 47개소 → ('21) 48개소 → ('22) 50개소

-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어통역, 점자지도 등이 가능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권역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3)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 (참고) 유치원 통합 교육 관련 참고 자료 >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교육부·인천교육청, 2017)」
-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 (교육부·전북교육청, 2017)」
-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8)」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20) 91교 → (‘21) 114교

** 통합교육 지원교사 우선 배정,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우수사례 보급

※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9)」 참고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 (참고자료)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에듀에이블)」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대학연계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③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 ④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방안 마련
- ⑤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에 청능훈련, 점자지도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 ⑥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 ‘정다운학교’ 운영 계획 및 우수사례(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 연구학교) 연수 콘텐츠(에듀에이블(eduable) > 통합교육) 활용 안내(‘22.3.)
- ⑦ ‘정다운학교’ 운영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특수교육 순회교사) 우선 배치
- ⑧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에 노력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 일반학교 교(원)장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적극 권장)
 - (교(원)장 연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포함)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 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관련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
-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권장
-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포함 권장
- 특수교육(통합교육) 관련 연수 과정 강화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과정 운영
 - 자격 연수과정(1급정교사, 교(원)장, 교(원)감)에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포함)*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근거) 교원자격별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 중심의 우수 학습공동체 발굴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일반학교 교(원)장이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 ②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학년 초 장애 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연수에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④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통합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현장 안착 강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학교] 지역 여건과 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 학교의 특성, 교원·학부모·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30%,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교과로 편성 가능, 다만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 감축 불가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반영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보급 확대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증진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단(국립특수교육원) 운영
- 시도교육청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학교(급) 우수 사례 발굴·확산

5)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
 - ※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동시 개정 추진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추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추진 일정(안)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시안 연구 각론 시안 연구 개정 교육과정 고시('22.하)	교육과정 후속지원 (평가기준 개발 등)	초등학교 적용	중·고등학교 적용 시작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22.하) 교과용도서 개발 시작 (교과서, 지도서, 전자저작물)		초등학교 보급 시작	중·고등학교 보급 시작

6)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및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

-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 마련
 - (특수학교) 국립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운영 모형 개발('22. 하.)
 - (특수학급)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교학점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22~)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 내 특수교육 관련 내용 >

- ◆ (운영 원칙) 특수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의 장애 정도 등 학교 여건에 맞게 학점제 운영
- ◆ (법적 근거)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학점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완료(초·중등교육법에 고교학점제 관련 사항 신설, '21.9.24.)
- ◆ (학점 이수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과목 이수기준(과목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 >

~2021	2022	2023	2024	2025~
기반 마련	운영 체제 전환	제도의 단계적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1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2학년 192학점
				3학년 192학점

7)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코로나19 등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장애유형별 정보 접근성, 맞춤형 콘텐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22.4. 서비스 제공 예정)
 - ※ 서비스 내용: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실시간 화상수업 서비스, 장애유형별 원격교육 콘텐츠 등
- (AI기술 기반 음성인식 자막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화상교육 시스템과 연계한 실시간 음성인식 자막 제공 서비스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환경 구축
 - ※ ('21) 자막 프로그램 개발 → ('22.4.~) 플랫폼 연계 자막 지원 서비스 실시 예정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장애학생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 교실 조성 및 운영
 - * AR·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오감을 자극하여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 ※ 체험 교실 수 : ('21) 30개교 → ('22) 43개교 → ('23) 60개교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기술 (VR·AR·MR·AI 등) 연계 복합체험 및 생활 밀착형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 제공
 - ※ 체험버스 운영: ('21) 2대 구축, 20회 운영 → ('22) 50회 운영 → ('23) 50회 운영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시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실시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권장
- ③ 장애영아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 상세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④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지원
- ⑤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⑥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강화
- ⑦ 시도교육청 단위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활성화
- ⑧ 특수교육 교육과정·교과용도서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시 의견 수렴 협조
- ⑨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현장 의견수렴 및 안내 협조

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순회교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
 -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20.7.14.)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해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 의료기관에 설치한 학급(이하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담인력(특수교사 자격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참고)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학생 지원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9, 재구성)>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 (순회교육 수업일수)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 순회교육 학생 중 학교 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현황 조사('22. 하.)
- ③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 ④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 ⑤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5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지원인력의 역할 등)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공간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실, 실습실 등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설(심리안정실 등) 구축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참고
-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특수학교 학급은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국립특수교육원) 실시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업무 협약(MOU) 체결 등 연계 지원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병·의원(장애인 주치의 지원), 종합병원 등

※ 추진 현황: ('19) 1교 시범 운영 → ('20) 5개 교육청 → ('21) 10개 교육청 → ('22) 13개 교육청

< (참고) 학교/교육청-병원 MOU 체결 및 운영 예시 >

학교/교육청	의료기관
▮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등 정보 제공 ▮ 병원 의료진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병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 학교 구성원 학부모 대상 의료적 지원 등 맞춤형 건강 관리 교육 실시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청과 의료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찾아가는 간호·재활서비스 등 지원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예시) ▲가래흡인(석션) 지원 시간과 횟수, ▲섭식 지원 형태와 방법, ▲호흡 상태, ▲복용 약물 종류 및 방법, ▲의료적 지원 제공자 등

-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사)의 참여와 소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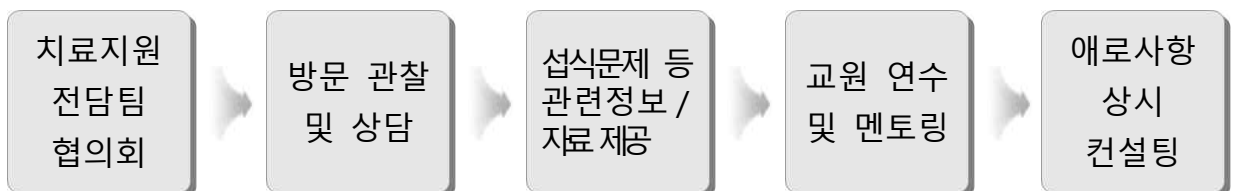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 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확대

< (참고) 간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사례 >

- ◆ (사례1) 병원 연계 파견 간호사 교내 상주 근무
- ◆ (사례2)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간호사 자격 보건교사 추가 배치
- ◆ (사례3) 병원 연계 간호사 자격 소지 지원인력(주 14시간 근무)의 방문 간호

- 시도교육청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으로 구성·운영



◆ **참고: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관련 유권 해석(보건복지부, 2022. 3.)**

- ◆ **(학교 내 의료행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소아중증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은 공익상 필요성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간호사의 의료행위)** 보건교사(간호사)는 학교보건법 및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루관 영양 공급, 기관절개관으로 기도 흡인 등을 할 수 있음
- 의료법상 간호사는 보건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 해석에 따라 위루관 영양공급 등을 일정 조건 하에 실시할 수 있음

<기존 해석>

- ▷ 위루관 영양 공급, 기관절개관으로 기도 흡인(석션), 구강마사지, 호흡곤란 시 산소공급 등 의료행위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행위 대상은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중증 지체장애 아동에 한정할 것
-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할 것(행위 명시)
- 아동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사의 판단을 구할 것
-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할 것(의료기관 서식)

- ◆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석션 및 위루관 영양공급 등 기존 유권해석 범위의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수행한다면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 **(면책 가능 여부)**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위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의료인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서 의료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시도교육청 특수교육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
 -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보급,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확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등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 ③ 지체중복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관계기관 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료적 지원 연계망 구축 지원
- ④ 시도교육청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22.2.)
- ⑤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가이드북」 보급 및 활용 안내('22.3.)
- ⑥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제출 및 결과 공유('22. 별도 안내)

6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참여 확대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실시
- 특수교육 지원인력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

< (참고)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항
 ☞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 (주요업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역할 담당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 지도·평가·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음
-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지원,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 욕구 보조)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의복 착·탈의, 건강 보호 등 안정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
- (학교 적응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계획에 '직무역량 강화 방안' 반영
 -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기본 과정」 등 활용
-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신규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실시 권장)
 -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 (기존 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직무교육 강화 (연 1회 이상 실시)
-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법* 포함한 맞춤형 연수 과정 개설
 - * (시각장애) 점자, 보행지도, (청각장애) 기초 수어, (공통) 보조공학기기 관리 등
 - 학교 관계자(관리자·교사·학부모·지원인력 등) 간 협력 증진 연수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고려한 배치**
 - 제25조(특정 자격·전공자등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 별표4 : 특정자격·전공자 등 소집 순위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 (1순위) 특수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 취득자
 - (2순위) 교대·사범대 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장애학생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재배치 금지**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⑩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이하 이 항에서 "복무기관"이라 한다)로 재지정 할 수 없으며, ...
 - 5. 장애학생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특수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 (신규요원) 시도교육청별 장애 인권교육이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배치 3개월 이내 실시)

※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운영 예정('22.1.~, 40명씩 5기수 총 200명 실시 예정)

* ('21.10.~11. 시범운영) 15개 시도 106명 신청(103명 이수, 이수율 96.37%), 만족도(4.26/5점)

- (기존요원) 학교에서 직무교육 실시 (연 2회이상, 장애인권·직무역량 강화)

< (참고)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근거와 내용 >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관련 근거

-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용

-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교육과정(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장애 인권교육과 장애 학생 활동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별표1: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

: (세부과업) 학습활동, 일상생활지원, 보행 및 이동 지원, 운동 및 재활 지원, 차량 승하차 지도·식사 등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교육실습 확대, 교육봉사 등 실시

- 재능기부 등의 형태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인력 확대 노력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 운영 관리 철저

-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연차적 배치 확대 및 복무·관리 철저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침(연수계획 포함) 수립
-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기관 교직원 대상 연수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등 운영·관리 방법의 다양화 노력

② 사회복지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 강화

- 사회복지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사회복지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병무청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참여자 모집에 적극 협조

※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1.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 적응 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특수학교 배치 사회복지요원 대상, 병무청 복무지도관의 현장 점검 실시 확대(연2회)

③ 2021년도 방역 등 지원인력 한시적 지원 사업 운영 결과 제출('22.3.)

④ 2022년도 방역 등 지원인력 배치 희망 학교 지원 노력 지속

7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대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 구성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작성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학부모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 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실시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매 학기 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9.10.23.):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활성화
 - ②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관리 강화
 -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와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④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보호자 참여 보장 및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⑤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 조직 활용 방안 강구
 - ⑥ 각급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강화
 - ⑦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관련 연수·컨설팅 내실화
 - ⑧ 개별화교육 관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확산
 - ⑨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
 - ⑩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권장·안내
 - ⑪ 차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에 따른 기능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협의체 구성('23.1.)
- ※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개선을 위한 현장 전문가 학교급별(유·초·중·고) 구성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추진목적

- ▶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안정적 학교 복귀 및 적응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 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에서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건강장애) 선정이나 취소 시 학부모의 동의와 의사진단서 등 확인 필요
-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 ※ 건강장애 선정 절차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先교육지원 가능
-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내실화

2)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전국 병원학교 현황 >

- ▶ (현황) 15개 시도 33교 운영 ('21.4.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학교수	9	3	4	1	1	1	1	2	1	1	3	1	2	2	1	33

- ▶ (누리집) <http://hospital.s4u.kr> (병원학교 안내 자료, 업무용 자료 탑재)
- ☞ 병원학교 관련 시도교육청간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 가능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강화
- 시도교육청별 관내 종합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추가 설치 노력
-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
- ※ 주책임 의료진에 '명예교장' 역할 부여,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

3)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등 교육지원 내실화

< (참고)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

- ▶ (프로그램) 초·중등 정규 교과 원격수업 제공(개별 맞춤형 화상수업*, 교과 콘텐츠 활용수업**), 생활 관련 상담,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 초·중·고 주요 교과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학습용 수업 콘텐츠 제공

구분	학년	교과 (과목)
초등	1~2	국어, 수학,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
	3~6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학	전체	(공통)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등 12과목 (선택) 한문, 보건, 진로와 직업, 환경, 생활프랑스어, 등 8과목
고등	전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체육 등 12개 교과 54개 과목

- ▶ (학교급별 누리집) 초등 (<http://es.s4u.kr>), 중학(ms.s4u.kr), 고등학교(hs.s4u.kr)
-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초등 전담 교사 배치, 원격수업 지원 관련 연수 참여

4) 건강장애학생 학적·성적처리 (‘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준수)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학적 처리
- (출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 (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시도교육청별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적응을 돕고 학습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 친구를 포함하여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권장
☞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22.2.)
- ② 초등과정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22.2.)
- ③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④ 일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건강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홍보 강화
- ⑤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교사와 학생, 특수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 연수 실시 및 건강장애학생 선정 홍보 강화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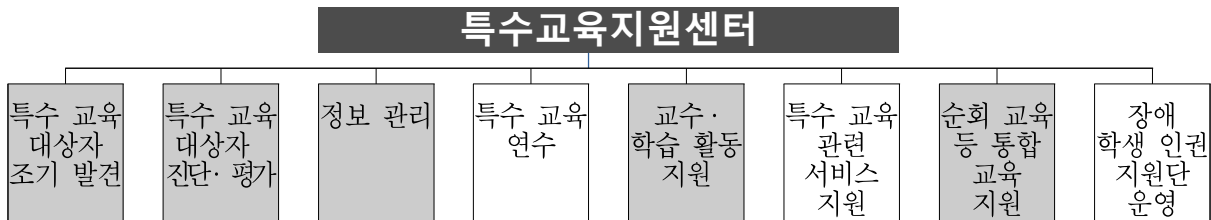
-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및 교원, 전문상담사 등 전문 인력 배치 : ('18~'22) 20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승진가산점 부여, 전보 우대,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유연근무제 인정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확대

* 진단·평가, 보조공학, 의사소통, 부모 상담, 시·청각장애교육 등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 시·청각장애교육, 진로·직업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

- 일반학교(일반학급), 가정, 시설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를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지원, 부모 교육 및 무상 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치료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등 치료지원 강화
 -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적 지원 필요 학생 우선 지원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청능훈련 등 장애특성별 조기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https://www.familynet.or.kr>)으로 전국 207개소 설치·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 활용도 제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관계기관 및 산업체 등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행정복지센터 등과의 교류를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대학(특수교육 전공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원봉사자로 활용
- 교육지원청 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업무 지원 센터(Wee 센터 등)와 협업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노력
 - * 전문상담사, 행동지원전문가,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자·보행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③ 모든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필수적으로 수업 실시
- ④ 경력 교원 배치 및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자체 규정 마련
- ⑤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⑥ 지역 내 특수교사, 일반교사 등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⑦ 국립특수교육원 시·청각장애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거점지원센터 담당교사 참여 지원
- ⑧ 시도교육청별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장애정도·수요 등을 고려한 치료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대 노력
 - ※ (20년 회계연도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장애학생 치료지원 사업의 시도교육청별 격차 해소
 - 치료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치료사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22.5.)
 -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행화 및 현장점검 강화
 - ※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의료적 지원 제공기관 연계 운영 강화
- ⑨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및 결과 보고('22.9. 이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6항 제7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0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1인1기(技)와 문화체험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지원 강화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참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예시) >

- ▶ 장애학생 악기(오케스트라), 성악 또는 합창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관람 등
- ▶ 장애학생 미술, 연극 프로그램, 댄스동아리 등 지원.

-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 (한국관광공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장애학생) 문화관광체험 여행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 등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보급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시도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반영

- 장애학생의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하여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용 신체능력검사(PAPS-D) 활용 권장

-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체능력검사 측정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관리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발 완료('18.12.)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확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발한 자료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 통합체육 교구나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수업 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참고)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스포츠 관련 관계기관 개발 자료 >

①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예술·체육프로그램, 2020, 경남교육청」

②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이론편, 실습편),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③ 「통합체육 수업 안내서 동영상*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 총 5개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91편(초등3~4학년: 29편, 초등4~6학년: 23편, 중등: 39편)

※ (배포)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누리집,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채널

< (참고) 통합 체육 지원 활동 예시 >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http://sokorea.or.kr>) : 통합스포츠(농구, 축구, 배구), 중증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스페셜올림픽 유아체육프로그램, 스페셜올림픽 종목별 지도서 및 영상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http://sports.koreanpc.kr>): 생활체육 프로그램, 통합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패럴림픽 종목 활용 등

-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단위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 (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시도 연수계획에 반영 권장)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교육청 거점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학교별 예술동아리 및 영화·연극 관람 활동 활성화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 ②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④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및 홍보



Ⅲ.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Ⅲ.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발전

추진목적

- ▶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1)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확대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등을 고려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양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체계를 확립·지원
 -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컨설팅 등 교실 수업 개선 및 자유 학기 활동(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원 강화
- 자유학기·학년제에 대한 교원, 학부모 등의 긍정적 인식 및 공감대 확산
 - 학부모 지원단 구성·운영 및 연수(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자유학기과 일반학기 연계학기(학년), 특수 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 설계 지원 강화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맞춤형 교원 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담당 교원의 업무 역량 강화
 - * 예)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원격)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관련 기개발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별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지속

< (참고)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자료 >

- ◆ ('17) 국어·사회, 수학·과학, 안전생활, 경제생활
- ◆ ('18) 직업·자립생활, 예술·체육활동 학생워크북(교사용지도서 포함), 교육과정 재구성 및 과정중심평가 자료집
- ◆ ('19) 교과 연계 예술·체육활동 자료집,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 ('20)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우수사례집(3종), 진로탐색 직종 소개 영상(13종)
- ◆ ('21) 장애유형별(시각·청각·발달장애) 진로탐색 직종 소개 영상(20종)

※ 자료 탑재 :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에이블 → 자유학기제

3)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체험 지원 강화

- 「진로체험망 꿈길(www.ggoomgil.go.kr)」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체험처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하고 기존 진로체험처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
 -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체험처를 지속 점검(사전-체험-사후 등 단계별 점검)하고, 이용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자유학기 담당교원의 업무 경감 및 체험처 안전성 제고
- ☞ 특수학교에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5차시 내외)* 운영
 - * ▲학교로 찾아오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제공

- ※ ('22년) 권역별 선도교육청(수도권: 경기, 충청권: 대전, 영남권: 부산, 호남·제주권: 광주)을 중심으로 중학교 과정 이상 설치 모든 특수학교에서 운영(180교)
- 장애유형별(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 장애)로 다양한 직업분야의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장애학생 대상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제공

4)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지자체, 대학 등 참여)하여 지역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 지원 강화
 - ※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질 높은 자유학기·학년제 운영을 위해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 확충 노력 지속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유학기 활동 운영 지원
 -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추진단 구성·운영,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컨설팅,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산 등 포함
- ② 시도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연구회' 등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험활동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지원
 -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유학기제 참여 지원
- ③ 지역 내 관계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업무협약 확대
- ④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관리 지원
- ⑤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 ⑥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활용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참여 희망학교 모집 시 협조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추진목적

- ▶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역량 등) 강화
- ▶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진학, 취업, 평생교육참여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동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동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초등학교(5, 6학년) 과정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등과 연계 운영

※ 「(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2020」
「(중학교)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2021」 활용

- **중도중복장애**(시각+발달, 청각+발달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자립생활중심**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예술·체육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재능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한 개 이상 운영 권장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지역 중심 맞춤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직업 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도움서 1~2권, 국립특수교육원, 2019」 참고

○ 학생 진로 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 활용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 직업평가 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활용을 통해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

* 「발달장애이용 직업흥미검사(NISE-VISIT), 국립특수교육원, 2019」 적극 활용

- 학생의 특기·적성, 흥미, 요구수준에 기반 한 개인별 진로설계 및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철저
- 학령기 학생에게 적시에 필요한 진로취업 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장애학생의 직업실기 역량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자격 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중 직업실기 역량 강화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단 자격증별로 취득 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지원 예산 조정 가능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직업평가 결과 토대로 학생의 적성과 요구에 맞는 현장실습 지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전문교과Ⅲ 「직업현장실습」 활용 권장)에 적합한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

-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업하여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확대 운영

*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학교 내 일자리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 등
 - 현장실습 참여 기간 3주 이상, 학교에서 산업체로 직접 현장실습 참여하는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
 - 시도교육청 인정 현장실습 우수기업*이나 정부(지자체) 및 장애학생 전문 취업지원 관계기관** 등에서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
 - *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장애학생의 안전 확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 선정한 산업체 등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구분	주요내용
현장실습 前	▶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 (현장실습 산업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 금지,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교육자료: 국립특수교육원) ▲('18)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20)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 ▲('20) 직업현장실습 콘텐츠 ▲('21) 직업과 자립 콘텐츠 ▲('21) 산업체 현장실습을 위한 인권교육' 리플릿 적극 활용 ▶ (교원·지원인력)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수 또는 교육기회 제공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컨설팅·협의회 등에 인권보호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계기관 직무지도원 교육 에도 인권보호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 ※ (교육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연수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학생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자료 및 콘텐츠 활용

현장실습 中	▶ (현장지도강화) 교원의 실습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직무지도원* 배치를 확대하고 인권 침해 사전 예방 *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학생들과 비장애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람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 지원 및 컨설팅 강화
현장실습 後	▶ (현장실습 보고회(평가회) 개최) 학생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시 인권보호체계 확립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방안 마련
 - 중증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 지역사회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산업체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한국 장애인개발원(직업재활 전문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정부부처(공공기관 등)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취업 지원 적극 참여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지자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연계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교육 확대
 -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산업체 단기견학·체험, 일배움 프로그램 등 운영
 - 학교 내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고용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교육청(광역시) 단위 「원스톱(One-stop)통합서비스지원협의체」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직업평가로 적합대상자를 선정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선발·운영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안정적 배치 지원

- (배치 근거)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개정 '18.7→시행 '20.3.)

< (참고)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①항 >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

-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자격이 있는 교사 1명 이상 의무 배치 ('22년까지 배치 완료 목표)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치 및 운영 지침 마련하고 안내 철저
 - ※ 진로상담 시간 시수 인정 및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상담실 확보 협조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 추진
 - 시도교육청별 진로전담교사 미배치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하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 연수대상자를 추가 선발한 경우 일반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연수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연수경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
 - 자격연수 이수 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되며,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종별** 전환(특수학교 2급 정교사→중등학교 2급 정교사)은 아님
 -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 근거: 교원자격증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사연구회 및 연수 등 운영 권장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 시도교육청(광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통합 서비스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연계·협력 강화
 - * 특수교육기관, 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으로 구성
-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취업처 발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 인력 배치
 -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배치 가능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하여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 진로·직업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전문적 역할 강화

○ 학부모에게 진로·취업 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설명회 개최 ▲국립특수교육원의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 시스템 '온맘'과 학부모용 '진로레터' 적극 활용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시도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실행 계획' 수립·제출('22.3.)
 -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예산 확보, 지도·감독 등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포함하여 수립
- ②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③ '진로 및 직업교육 교사 수업연구회' 등 육성·운영
- ④ 진로 및 직업교육 전문화·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현장지원 컨설팅 적극 활용
- ⑤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관리를 위한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용 안내('22.3.)
- ⑥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 마련('22.3.)
- ⑦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2.4.) 및 직업유지 지원 강화
- ⑧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점검 철저('22.4~11.)
 - 교육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실습 운영 컨설팅 지원('22.5~8.)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단위학교(급) 현장실습 운영 점검 실시('22.9~11.)
- ⑨ 장애학생 수요 및 요구에 따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차년도 관계부처 일자리 수요조사 적극 협조('22.11.)
- ⑩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제출('22.11.)
- ⑪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점검 결과 제출('22.12.)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추진목적

- ▶ 장애인 고등교육 복지지원 체계 내실화 및 장애대학생 맞춤형 편의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권 보장
-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학 및 취업 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제32조(학칙 작성),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1) 장애대학(원)생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20~'22년) 추진

- 사회·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발 및 지원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영역별 지표 개선을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추진
- 대학 입학 후 적응 및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지원정책 설명,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용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내실화

- 대학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운영 개선
 - (대학 행정적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2종의 사업을 1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금액 현실화
 - ※ 교육활동지원사업,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사업과 협업하여 대학 대상 사업 공동 안내 및 정보 공유 강화
 -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 지원) 대학의 자체 여건에 따라 장애대학(원)생의 교육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 장애대학(원)생 및 대학의 참여 활성화
 -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광판, SNS, 누리집, 장애인 단체 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공모전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업운영 우수사례 공유

3) 장애대학(원)생 진로·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거점대학 중심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체계 활성화
 -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 장애대학생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제공
 -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파란사다리 사업의 참가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을 우대 선발하여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지원(온·오프라인)

4)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책무성 제고 및 협력 강화

-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전환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고교 장애학생 등에게 대학 입학 후 안정적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사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 ※ 장애학생 대학생활 적응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대학의 역할 및 인식 공유
 -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권고, 대학구성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실시 등 안내
 - 교육지원인력 지원,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 편의제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적극적 지원 유도
- 교수·학습 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대학과의 협력 강화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 시각장애 대학생 대체교재 제작 및 보급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추진
 - *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목적

▶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1)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 지역 학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20) 5개 → ('21) 15개 → ('22) 35개(누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내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편의 제공 강화

※ ('20) 10종 → ('21) 22종 → ('22) 30종(누적)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인원, 프로그램 현황 등 기관 운영에 대해 현황 조사 실시(결과 공표)

※ ('20) 기관, 종사자, 학습자 현황조사 → ('21) 기관 현황조사 → ('22) 기관 현황조사

2)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과 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18) 일상생활 → ('19) 기초문해 → ('20) 학력보완 → ('21) 직업능력향상 → ('22) 인문교양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직업능력향상 영역)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평생배움세상(<https://www.nise.go.kr/lifelong>)' 탑재

-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과정 개발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기능 개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기초문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중학 교원 양성 연수

- ※ ('20)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 → ('21)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개발 → ('22)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 양성 연수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야학) 지원 방안 마련
 - ※ ('19) 실태조사 → ('20) 기초연구 → ('21) 지원 매뉴얼 마련·안내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등 예산 편성 확대 유도(지자체, 시도교육청)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현황(누적) >

구분	2019	2020	2021
광역시·지방자치단체(시·도)	9	10	13
시도교육청	7	8	10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프로그램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수 현황(누적)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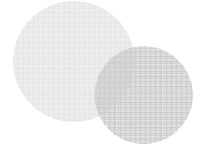
구분	프로그램	2020	2021	2022(예정)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프로그램	155	263	350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435	500	550
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인권 연수	198	255	350
4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	124	146	200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 기관설치·운영자, 교육담당자, 교육보조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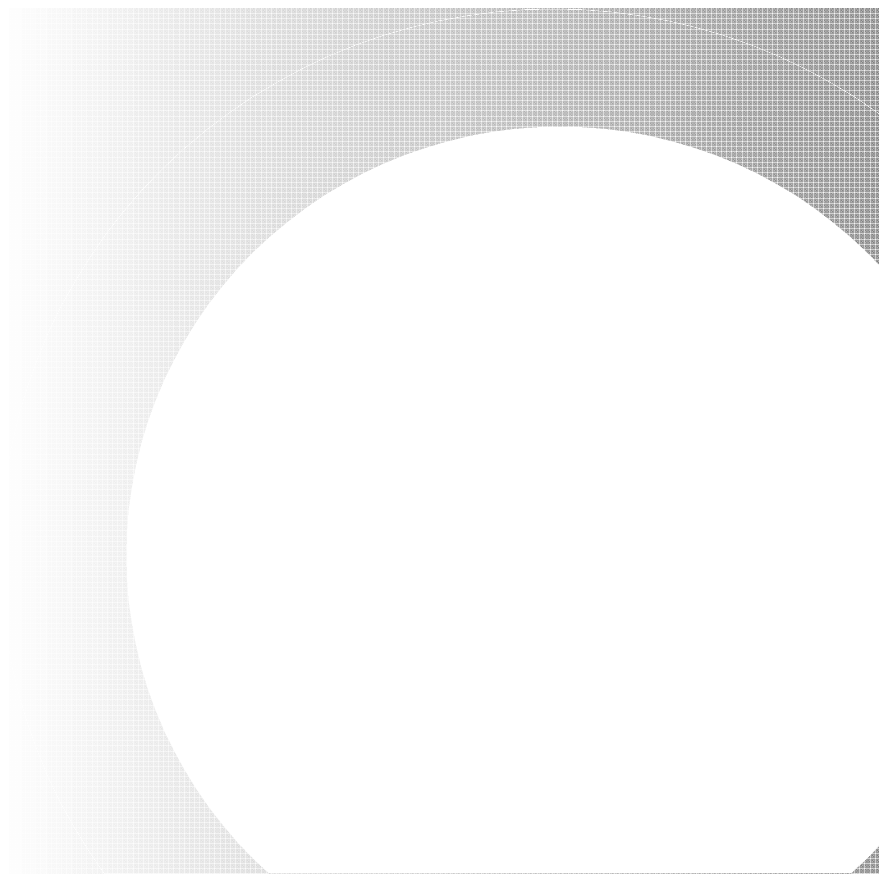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 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방역상황 등 현장 점검 실시(수시)
- ③ 유·초·중·고 및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평생교육법 제21조의2)
- ④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권고
- ⑤ 시도와 교육청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IV.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IV.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추진목적

- ▶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확산 등을 통한 유·초·중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활용 안내)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

- ◆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누리집·유튜브 탑재
- ◆ (초등) (KBS 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라마,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탑재

- 장애이해교육*을 반영한 유치원 및 각급학교 연간교육계획 수립·추진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참여, 장애체험활동, 교내·외 전문강사 강의, 장애이해 문화·예술행사 참여 등

-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풀 활용

-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장애체험활동 및 관련 행사 참여 등) 프로그램 지원

- 학교별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를 공감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연1회, 기관별(각급학교 등) 교육훈련 또는 연수 담당자가 주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등),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 학교 대상 장애인식 수준 진단·처방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지수’ 도구 개발·활용으로 장애이해교육 효과성 제고
 - ※ ('22) 학교 장애인식 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국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개선에 기여
 - *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공감 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등
- 유·초·중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등) 배포·활용(각급학교,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산하기관 등에 확산)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le.net) 누리집의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 탑재 공유·활용
- 범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콘텐츠 전파
 - ※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에 교육·홍보 콘텐츠 게재 등

시 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 교육부 공문('22.4. 시행 예정)을 참조하여 장애인의 날 주간에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 ② 학교별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속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치
- ③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확대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주요 내용 (2018) ❖

- ◆ (목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
- ◆ (추진과제) 장애학생 인권 침해 감지 및 대응, 예방체제 구축(5대 분야 16개 중점과제)
 - ① (인권 침해 대응체제 강화) 인권 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행동지원체제 구축 등
 - ②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 강화,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등
 - ③ (인권보호 여건 개선) 장애학생 담당 인력 확충, 취약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
 - ④ (인권보호 역량 강화)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및 교육 강화 등
 - ⑤ (사회적 예방체제 구축)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https://www.nise.go.kr/onmap>) 구축·운영

* 사용자 위치 기반(GPS) 기관 정보(법률, 폭력피해 지원, 상담, 교육, 의료 등) 제공 및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고·제보 시스템으로 국립특수교육원·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관련 사안 접수 및 조치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내 지원기관 정보 등록 및 사용자에게 안내·홍보

-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 조사 매년 실시
- 관계부처(청) 주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실태 점검 협조

< (참고) 관계부처 장애학생 인권 실태 점검 현황 >

-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조사(연 1회)
- ◆ (보건복지부)
 - 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면담조사 실시
 - ('19년) 사립특수학교 법인 운영 거주시설 장애학생 면담조사 실시
 - ('21년) 거주인 100명 이상 거주시설 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 실시
 - ②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실시(교육에서의 차별, '21.~'22.)
- ◆ (병무청) 정기 복무점검 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면담조사(연 2회)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 중 전직 희망자 우선 배치)
 -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교원을 양성하여 관내 전문가 인력풀로 활용
-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핵심교원 양성 직무연수」 적극 활용
→ 연수 이수 후 교육청, 학교 내 인권교육 및 행동지원의 선도적 역할 담당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참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

- ◆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체적 역할 명시
 - (필수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연구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급) 교장(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 (기타위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인권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 ◆ (역할) 현장지원(정기/특별), 교육 및 연수, 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등 실시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필수 참여하되, 팀장(계장)이 참여하기 곤란할 경우 팀원 참석
 - (특별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현장지원) **결과 보고***

* 인권지원단 전월 현장지원 결과 시스템 입력제출(매월 5일까지) → 시도교육청 결과 승인 처리(매월 15일까지)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별 취합점검(매월 30일까지) → 교육부 보고(매월)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의 진술 조력 역할 담당**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 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 특수학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협의체 구성 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https://www.nise.go.kr/onmap>)' 활용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비장애)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을 함양하고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몸짓상징프로그램」* 활용,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켜 인권 침해 사전 예방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표정, 터치 등을 통칭

<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 자료 >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인권교육자료, 인권문화콘텐츠(별별이야기 등)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누리집: 장애공감(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등) 자료 활용
-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활용
-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5종: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장애)」, 국립특수교육원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 (예시) 장애학생 인권 보호 관련 학칙 >

-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특별 지원 사항
-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 학교 단위 장애 공감 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권동아리 운영
 - ※ 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1교 1특화 프로그램* 운영
 - * (예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4)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지원 강화

-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구축·운영(대구, 경기, 충북, 전북, 경남)하여
 - ▲행동중재 지원모델 개발·확산, ▲우수사례 발굴·안내,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행동중재 프로그램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실시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하여 학교 내 행동중재 계획·실행·평가, 컨설팅 등 역할 수행
 - * ▲(운영과정) 전문자격증 과정, 집중연수과정, 특별학위과정 등, ▲(운영방법)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와 연계, 대학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청 자체 추진 등
 - ※ 전문가 양성 과정 참여 대상 자격, 역할, 선정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 마련 추진
- 심각한 위기행동은 학교관리자, 행동지원 전문교사(전문상담교사 등), 교육청 자문위원, 행동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위기행동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 운영 권장

<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예시 >

- ◆ (대상) 학교 내 심각한 위기행동이 있는 학생
- ◆ (중재회기)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학생 개인별 총 15회기 이상
- ◆ (프로그램내용) 행동의 기능분석, ABA, 팀사례회의, 교사 및 학부모 상담, 약물치료, 가족지원 심·휴식·힐링 등 학생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모든 중재 프로그램 포함

-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 ▲(구성) 행동분석전문가, 교수, 행동지원 전문교사,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
 - ▲(역할) 행동분석(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대처방안 지원 교원 연수 등 지원
- 가족, 학교, 전문가의 협력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조기 대처
 - 학교(특수교사, 일반교사),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상담 제공

<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참고자료 >

- ◆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자료」, 서울시교육청, 2021
- ◆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2020
- ◆ 「장애학생 위기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 인천교육청, 2019
-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 부산교육청, 2014」 활용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 내실화
- ② 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계획 수립('22. 2월)
- ③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이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
- ④ 2021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시도교육청별 예방책 마련 및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 ⑤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3시간 이상) 의무 실시 안내
 - 시도교육청 국가 시책 추진 평가 점검 지표* 항목에 포함('22년부터)
 - * [3] 안전한 학교 구현 (3-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 ※ 「2022년 시도교육청 평가 실행계획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6120, '21.10.20.) 참조
- ⑥ 중대 사안 발생 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즉시 보고(공문)
- ⑦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신고) 운영 및 조사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홍보 및 탑재 기관 현행화 추진(연 2회, 상·하반기)
- ⑧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 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 장애학생이 피·가해 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하고 진술 조력 가능('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67)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②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9조의4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1회 이상 확인·점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⑨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⑩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사이트를 통해 공유
- ⑪ 특수학교 행동지원팀, 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⑫ 교내·외 교육활동 시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착석 유지를 위해 물리적인 도구나 위력으로 통제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 장애학생 자기 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감나는 안전 훈련 실시 권장
 -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학교별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국민안전포털(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참고자료 활용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2회 이상 실시
 -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미달 특수학교는 시설 연간정비계획 수립·시행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교육,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안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시 등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 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 ③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 ④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4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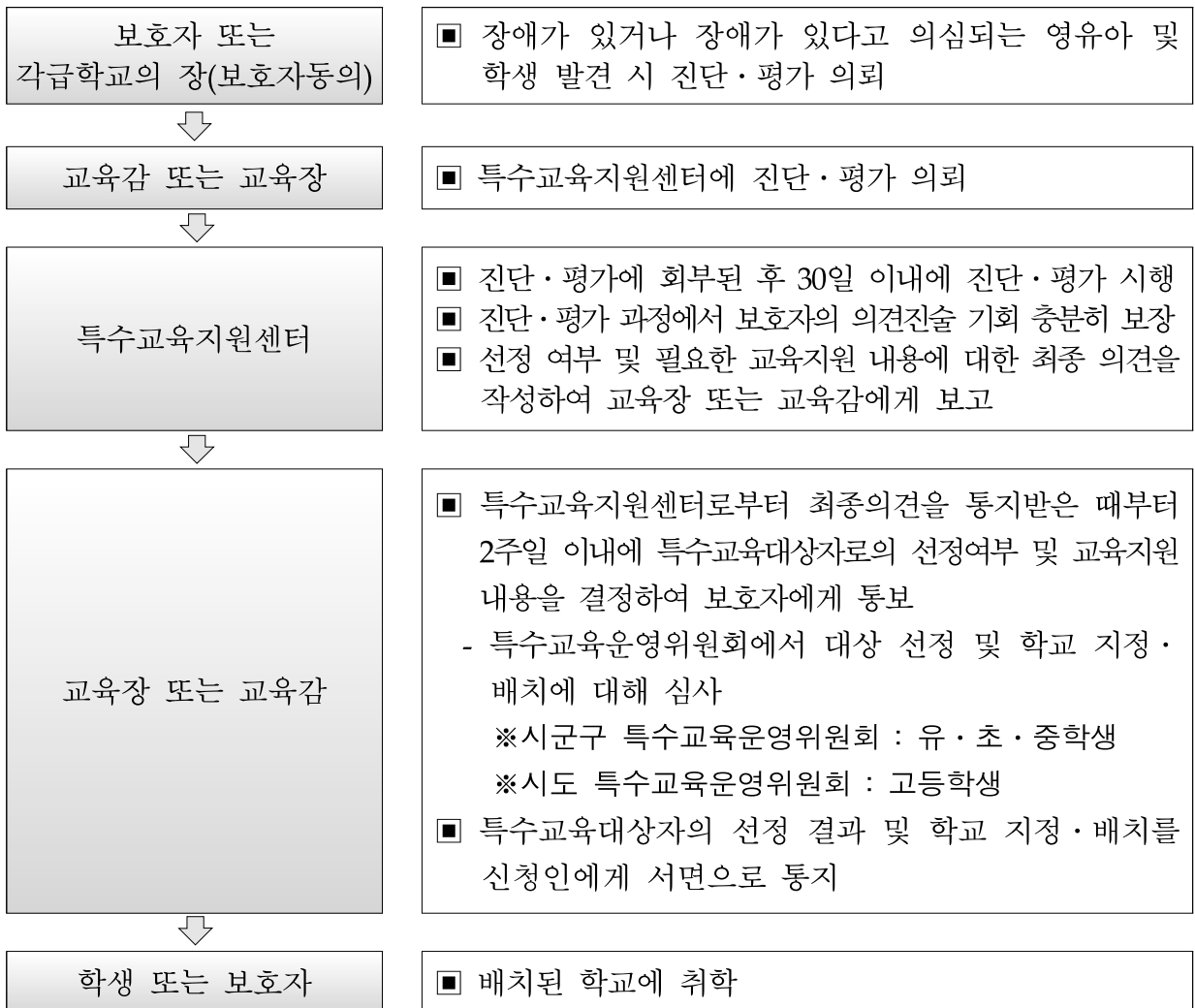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장애 조기 발견 가능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시도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각급학교 누리집에 관련 내용 탑재·홍보, 부모교육이나 상담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영유아가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적령에 취학할 수 있도록 독려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가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 상담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운영
 -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 지역의 특수교사, 의사, 치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병원,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강화
 - * 국립특수교육원의 기초학습능력검사(2017), 적응행동검사(2019) 등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 (근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③항 >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유치원 정원에 포함시켜 최우선 배치하고, 이후에 추가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도 정원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국공립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정원에 관계 없이 100% 우선 배치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 ※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적 등록·관리 필수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취학 및 재취학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 또는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
 - ** (국가인권위원회, '15.8.19.)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 기회 제공(평생교육 포함) 방안 마련 필요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 ②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선정·배치 절차,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 배부 및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철저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안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내실화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경남교육청, 2017) 활용
- ④ 구비서류 간소화
 -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도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 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 없이 추가 배치
 - 의무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정보관리 공유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 ⑥ 특수학교 유치원의 나이스 사용 의무화 안내
- ⑦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현황 조사(22.12.)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관계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대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안정화 지원
- '나홀로 가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교육부)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활성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 활동 등 운영(월 최대 44시간 범위(월~토)) → 만 6세 이상의 발달장애학생이 지역 내의 다양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학생의 함께 참여하는 통합방학프로그램 발굴·확대

- 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및 처우 개선 노력 지속
- *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담당인력 등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등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 ②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④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돌봄 해소 지원
- ⑤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및 방과후활동 협력학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법 제3, 5, 6, 21, 27, 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전담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배치 및 특수교육 관련 지원 기능 강화

* ('21) 대전, 충북, 경남, 대구

※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적정 배치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등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 설치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강화
-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 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①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철저
- ②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담 부서 담당 인력 확충 등의 노력으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③ 특수학급 지원 강화: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가급적 경력 교사 배치, 특수학급 담당 교원의 불가피한 휴가 사용과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보결 강사 인력풀 확보
- ④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학급 시설·설비 구입,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7조 개정('12.3.21.)으로 국립학교 장학지도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

V. 2022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V. 2022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22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 2022. 9. 5.~7. (예정)
- 장 소 : 미정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
-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2) 2022년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 시 : 2022. 10. 5. ~ 6. (예정)
- 장 소 : 미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상영역 : 발달장애
- 참가대상 : 전국 발달장애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학생

3) 2022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22. 5.
- 장 소 : 경북 구미시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원 등

2 기타 행정사항

1) 2022년 특수교육통계 조사 실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일반학교
- 기간 : 2022. 4.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법 : 나이스 통계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2)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 대상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 기간 : 2022. 6.
- 내용 :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법 : 엑셀 서식 자료 입력 및 점검, 제출 기한 준수
- 제출처 : 국립특수교육원

3)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초4~전공과), 학부모, 교원
- 기간 : 2022. 5.~8. (예정)
- 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관한 사항
- 방법 :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대면조사 실시
- 주관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